

보 도 일 자

2012. 6. 28. (목) 조간

2012년 금융회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 원장 姜柄皓)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원 방안으로 지난 3월 KOSPI200사 의안분석을 수행해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분석 대상을 추가하여 2012년 1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12년 3월 제정)에 따라 의안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함

II. 의안분석 결과 요약

1. 주주총회 일정

- 금융회사들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로 3월과 같은 개최 집중 현상은 다소간 완화되었지만, **소집공고일이 개최일의 평균 17.6일 전**(상법상 기한은 14일전)이어서 심도 있는 의안분석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여전히 제한함
 - 다만, 3월 결산 금융회사 39사 중 32사가 결산월을 12월로 바꾼 결과, 2014년부터는 비금융회사와 함께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개최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

2. 의안 상정 동향

-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4월15일 시행된 개정상법 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금융회사(51개, 96.2%)에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다는 사실임
 -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킨 회사는 22사(41.5%)로서 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승인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권고함
 - 이익배당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회사는 15사(28.3%)로서 배당정책 마련·공시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반대를 권고함

3. 회사별 · 안전별 반대 권고 비율

- 53사 중 하나 이상 안전에 반대 투표를 권고한 회사는 42사(79.3%)임.
안전 기준으로는 전체 464개 안전 중 95건(20.5%)에 반대투표를 권고함
 - 안전별 반대율(개별건수 기준)은 감사위원 선임(33.3%), 사외이사 선임(31.0%), 정관 변경(29.6%) 순이며, 이들 안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집계하면, 전체 이사 후보의 22%(42/191), 이사와 감사위원(또는 감사)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의 26%(74/285)에 반대했으며, 임원 선임 안전 상정 회사의 76.6%(36/47)에서 임원후보 1인 이상에 반대함
- 사외이사 · 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으로 낮은 출석률을 제외하면 주로 **경영진과의 독립성** 저해 요인임

< 반대 사유별 사외이사 · 감사위원 선임 반대 건수 >

	주주권의 침해	행정.사법적 제재	최대주주 등 회사.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주요 거래법인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 임직원	과도한 장기 연임	장기 연임	낮은 출석률	감사 관련 문제	관련 이력	계
사외이사	3	2	5	14	1	2	6	12	-		45
감사위원	0	1	2	9	0	1	6	5	10		34

*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 안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중복을 허용

- 감사위원 후보의 최대 반대사유는 감사업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이력(10건)으로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드러난 후보의 감사위원 재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음
- 임원 선임 안전에서는 KOSPI200 편입 비금융회사(183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의 비율이 더 큼**

< 금융회사와 KOSPI200 비금융회사의 임원선임 안전별 반대율 > (%)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 전체(소계)		감사위원		임원 전체		
	I	II	I	II	I	II	I	II	I	II	I-II(%p)
회사 수 기준	8.1	7.0	64.4	52.0	67.4	43.8	53.7	46.4	76.6	49.7	26.9
건수 기준	4.6	3.2	31.0	33.2	22.0	16.2	33.3	32.0	26.0	20.6	5.4

* I 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금융회사(지주 · 은행 · 증권 · 보험) 53사, II는 KOSPI200 비금융회사 183사임

-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 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Ⅲ.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과

- 2012년 6월25일까지 49사가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흥국화재 해상보험,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47사는 안건 전체가 가결됨

< ‘부결’ 및 ‘수정 조건부 가결’ 안건 현황 >

	안건	CGS 권고안	주총 승인 여부	비고
흥국화재해상보험	감사위원 1	찬성	부결	
미래에셋증권	정관 변경	반대	수정 조건부 가결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의 수정

Ⅳ. 시사점

- (임원 적격성 관련)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 특히 감사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함께 임원 자격 규제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
 -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입법·시행될 필요
- (주주총회 관련)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 그에 앞선 소집결의 공시 시 안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정관변경 관련) 이익배당, 이사 책임 감경 등 관련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정책** 마련 및 공개, 이사 책임 감경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 (정관)조항 마련 등 사후 조치 필요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부. 끝.

※ 담당부서: Proxy Service 부문

담 당 자: 송민경 연구위원 (3775-3884, mksong@cgs.or.kr)

윤정화 연구원 (3775-3744, yinth@cgs.or.kr)

(붙임) 의안분석 결과 세부 내용

1. 분석 대상 회사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 중 부동산금융회사, 저축은행을 제외한 53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의안분석을 수행함
 - 은행(10개사), 증권(23개사), 보험(14개사), 기타(6개사)
- ※ 금융지주회사는 주된 자회사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구분함

2. 주주총회 일정

- (현황1) 결산월에 따라 53개 금융회사 중 14개사는 2~3월에, 39개사는 5~6월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과 같이 특정 주간과 일자에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되는 현상은 다소간 완화됨
 - ※ 3월 KOSPI200 편입 190개 회사 중 74.2%가 3월 3주와 4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3월16일(금), 23일(금) 개최한 회사가 각각 59사(31.1%), 78사(41.1%)에 이룸
- (현황2)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개최일의 17.6일 전에 이루어짐
 - KOSPI200 편입사 중 비금융회사인 183개사는 해당 기간이 17.2일로서 비슷하며, 업권별로는 은행 18.1일, 증권 16.0일, 보험 20.1일로서 증권이 가장 짧음
 - 집합투자업자는 주총 개최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하므로, 소집공고 후 평균 12일(대개 4일의 주말 휴일 포함) 내에 전체 투자대상회사의 의결권 행사 업무를 완료해야 함
 - ※ 상장회사는 최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함(상법 제542조의 4)
- 다만, 3월 결산 금융회사 39사 중 32사가 결산월을 12월로 바꾼 결과, 2014년부터는 비금융회사와 함께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개최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관련법상 기한에 가깝게 이루어지면, 정보 수집 등 의안분석에 따르는 기관투자자의 부담이 급증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짐

3. 의안상정 동향 및 주요 이슈

- 개정상법 시행(4월15일)에 따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상장 금융회사가 51사 (96.2%)로 매우 많았다는 점이 금년 주주총회의 주된 특징임
 - 중요한 변경 조항은 재무제표 승인 및 (사외)이사 책임 감경 관련 조항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 관련 조항임
 - 개정상법 제462조 제2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15개사임
 - (문제점) 이 조항을 변경함에 따라 회사는 개정상법 조항에 근거해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게 되고, 추후 부적절한 배당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게 됨
 - CGS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 18.3)에 따라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를 권고함
 - 개정상법 제400조에 근거해 (사외)이사 책임 감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는 22개사임
 - 이 중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회사가 20개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2개사임
 - 후자의 경우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주주 권리가 제한되고 회사는 그만큼 손해 보전이 어려워져 **책임경영 약화**의 우려가 큼
 - CGS는 자체 가이드라인(지침 7.2, 8.4)에 따라 상기 2개사에 반대 투표를 권고하였으며, 나머지 20개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함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월 결산 금융회사 39사 중 32사가 결산월을 12월로 바꾸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함
- ※ 안건이 통과되면 2013 사업연도는 한시적으로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며, 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2014년 3월에 개최하게 됨

4. 안건별 세부내용

- (반대 권고 안건) 반대를 권고한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 39건, 감사위원 선임 31건, 정관변경 16건 등 순으로 대부분 **임원 선임**(74건)과 **정관변경** 안건임

< 안건별 반대 권고 건수 >

	사외이사 선임 ¹⁾	감사위원 선임 ¹⁾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사내이사 등 선임 ¹⁾	감사 선임 ¹⁾	기타 ²⁾	전체
건수	39	31	16	4	3	1	1	95

-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임

- (안건별 반대율) 2건 이상 반대한 안건에 대해 건수 기준 반대율을 계산하면 감사위원 선임(33.3%), 사외이사 선임(31.0%), 정관 변경(29.6%), 이사보수한도(7.4%) 순으로 역시 **임원 선임**(26.0%)과 **정관변경** 안건에 주로 반대 권고함

- 회사 수 기준으로는 사외이사 선임(64.4%), 감사위원 선임(53.7%), 정관 변경(31.4%), 사내이사 선임(8.1%) 순으로 반대율이 높음
- 집계하면, 전체 이사 후보의 22%(42/191), 이사와 감사위원(또는 감사)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의 26%(74/285)에 반대했으며, 임원 선임 안건 상정 회사의 76.6%(36/47)에서 임원후보 1인 이상에 반대함

< 안건별 반대율 > (%)

	정관 변경	이사 선임 ¹⁾	감사위원 선임 ¹⁾	감사 선임 ¹⁾³⁾	이사 보수한도	기타 ²⁾	전체
회사 수 기준	31.4	67.4	53.7	100	7.7	8.3	79.3
건수 기준	30.0	22.0	33.3	100	7.4	8.3	20.5

- 1)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 12개사에서 각 1건씩 상정한 12건의 안건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건(1사)에 반대함
3) 100% 반대율은 1사에서 상정한 1인의 후보에 반대한 결과임

< 임원 선임 안건별 세부 반대율 > (%)

	사내이사 ¹⁾	사외이사	이사 선임(소계)	임원 전체 ²⁾
회사 수 기준	8.1	64.4	67.4	76.6
건수 기준	4.6	31.0	22.0	26.0

- 1)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2)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3)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 (임원 선임 반대사유) 사외이사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 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임
 - 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감사업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이력,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장기연임, 낮은 출석률 등임
 -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 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모두 **경영진과의 독립성 측면**에 문제를 야기할 요인으로서 반대 후보 상당수가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됨

< 반대 사유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반대 건수 >

	주주권의 침해	행정.사법적 제재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회사.최대주주의 주요거래법인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 임직원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낮은 출석률	감사업무 관련 문제 이력	계
사외이사	3	2	5	14	1	2	6	12	-	45
감사위원	0	1	2	9	0	1	6	5	10	34

*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중복을 허용함

※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12.3) 지침 10.1은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사회 업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후보가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함과 아울러 과거 감사 관련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함

-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과거 재임 중 감사업무 관련 문제와 연루된 이력이 있는 후보(10건)가 다시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례임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관으로 기존 감사를 대신하는 준법경영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핵심 직무로 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3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함
 - 반대 사례의 후보는 대개 과거 감사위원 재임 시 회사에서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실명제법 같은 주요 법규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관련 임직원과 회사가 중징계를 당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나 건전 경영, 신뢰도에 문제가 드러나 감사위원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다시 감사위원으로 추천됨
 - 이는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금융회사에서조차 그 직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함

□ **(비금융회사와 비교)**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KOSPI200 편입 비금융회사(183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의 비율이 더 큼

○ 이는 여러 측면에서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임

※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반영한 ‘장기연임’ 기준을 제외하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지침을 적용함

○ 금융회사의 높은 반대율은 경영감독의 중추인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금융회사와 KOSPI200 비금융회사의 임원선임 안건별 반대율 > (%)

	사내이사		사외이사		이사 전체(소계)		감사위원		감사		임원 전체 ¹⁾		
	I ²⁾	II ²⁾	I	II	I	II	I	II	I	II	I	II	I-II(%p)
회사 수 기준	8.1	7.0	64.4	52.0	67.4	43.8	53.7	46.4	100 ⁴⁾	52.2	76.6	49.7	26.9
건수 기준	4.6	3.2	31.0	33.2	22.0	16.2	33.3	32.0	100 ⁴⁾	48.1	26.0	20.6	5.4

1) 임원은 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모두 포함

2) I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 53사, II는 KOSPI200 소속 비금융회사 183사임

3)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건에 포함된 개별 후보를 별도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4) 100% 반대율은 1사에서 상정한 1인의 후보에 반대한 결과임

* KOSPI200 사는 “2012년 3월 KOSPI200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4.6) 참조

□ 부적절한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점검·개선 및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 우선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선임 절차와 자격요건 등을 개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입법·시행될 필요

- 정부입법 최종안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 **CEO나 최대주주 일가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의 의무·책임 강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결격사유 확대 등 법규 정비와 감독기관의 엄격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 강화가 요청됨

4. 정기주주총회 결과

- 2012년 6월25일까지 53사 중 49사가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이 중 47사는 주총에 상정된 안건 전체가 가결됨
- 2개사에서 안건 부결 및 수정 조건부 가결이 있었으며, 해당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CGS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부결 및 수정 조건부 가결 안건 현황 >

	안건	CGS 권고안	주총 승인 여부	비고
흥국화재해상보험	감사위원 1	찬성	부결	
미래에셋증권	정관 변경	반대	수정 조건부 가결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허용하는 조항의 수정

※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기 후보는 사외이사 후보로도 추천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CG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에 반대를 권고할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CGS는 미래에셋증권이 주주총회에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에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는 그 조항의 수정을 조건으로 가결됨